

라. 농업인단체와의 협력강화

*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농촌지도사 김진일, 한재수, 031-229-5851~2)입니다.

□ 목 적

-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농촌진흥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관계형성의 기틀 마련
- 각급단위 농촌진흥기관 업무 특성별 관련기관과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·지도사업 전개

□ 추진방향

- 기존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는 탄력적 차별화 운영
-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, 농촌진흥사업 연구설계 및 평가시 관련 단체 대표의 참여, 기술적 지원방안 확대
- 농업인단체와의 협력 증진과 지방농촌지도기관과 연계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된 과제를 농촌지도사업 중점 반영

□ 추진근거

- 농촌진흥법 제2조2항
-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(농업관련단체의 육성)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

□ 추진내용

- 농업인단체와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
 - 농업인 단체 총괄 부서 : 단체지원 종합계획 수립
 - 농업인 단체 현황 및 활동 정보 수집 분산
 - 분야별 전담부서 : 전문 분야별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
 - 전문분야별 단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
- 예) 쌀 관련단체 ⇒ 쌀 지도전문 부서

- 관련 품목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상시 협력체계 유지
 - 고객관리 차원의 특정고객으로 분류 현안사항 청취 및 교류
 - ※ 농촌지도사회, 4-H본부 등은 자립기반 조성파 민간역량 강화 유도
- 농업인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간담회 정례화 : 년 2회
 - 단체장/사무총장 등 초청 연구·지도현장 탐방, 설명회 등
- 전담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: 년중
 - 사업설계 심의회, 사업 평가회 참여 확대
 - 최신 연구개발, 지도사업 성과에 대한 정기 설명회 개최로 농촌 진흥사업 이해확산
- 주요사업 현안과제 발굴 등 정책대안 수립 협의회 개최
 - 농업관련 이슈,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공급증 해소
- 지방농촌지도기관과 지역 농민단체 상호 협력관계 증진 지원
 - 농정시책, 농축산물 유통, 당면 이슈 등의 최신정보 가공 분산

농촌진흥기관	협력 ↔ 환류	일반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자/ 기술정보 개발 ○ 교육/ 시범사업 지원 ○ 시책 및 기술홍보 ○ 현장 애로기술 개발·보급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체회원 실천교육(의식,유통,경영) ○ 소비자 요구반영과 신뢰 구축 ○ 브랜드 개발, 도·농 교류 증진 ○ 품목단체 회원 결속, 자율적인 생산물 수급조절 능력 배양

□ 기대효과

- 농촌지도사업과 유기적 협력 관계 조성으로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 지원세력 확보
-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·지도사업 전개